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228
-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 외 11명
- 발 의 일 : 2019년 12월 1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1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입법예고(2020.1.16. ~ 1. 23.) :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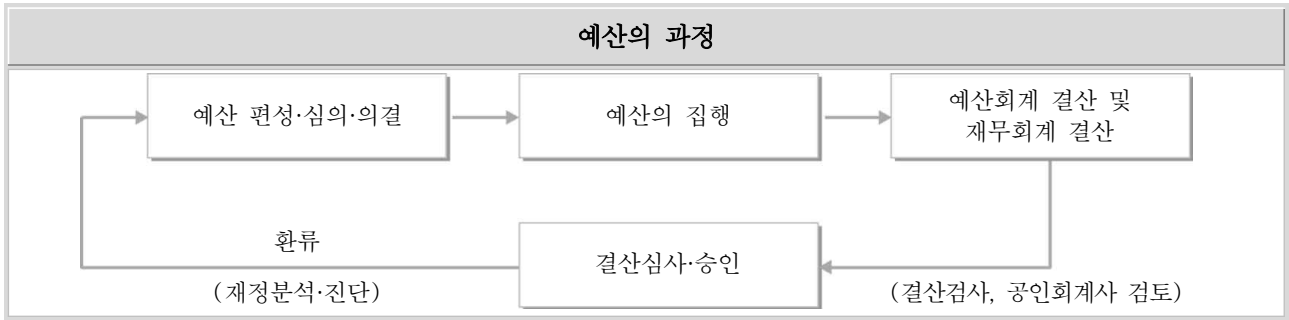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위원 구성에 성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단서 추가).

< 산·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② (생략)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③ ----- ----- ----- ----- -----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임.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참고2 참조)를 살펴보면, 세입 38조 1,121억원 및 세출 34조 3,355억원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비효율, 집행잔액 과다, 보조금 정산 미흡, 세외수입 징수 미흡 등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계약업무 개선, 기금 운영 내실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개선 등 총 81건의 시정권고가 이루어 졌음.

< 시정권고사항 : 81건(예산운용 53, 세입 12, 업무개선 12, 성과지표 2, 기타 2) >

구분	권고사항	건수	구분	권고사항	건수
합 계			81건		
예산 운용	예산편성 미흡	13	세입 분야	세외수입 징수 미흡	9
	효율적 예산집행 미흡	11		세입과목 오류 등 기타	3
	불용예산 과다	10	업무 개선	계약업무 개선	3
	예산집행절차 부적절	6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개선	2
	보조금 등 정산 미흡	6		기금운영 내실화 미흡 등	7
	사고이월 과다	4	성과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2
	예비비 집행절차 미흡	3	기타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미흡 등	2

○ 현행 조례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명으로 하고(제2조), 서울 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 방법(「지방자치법」 제64조)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 3조).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안 제3조 후단 규정 신설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제21조제2항)한 사안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 점유율이 매년 10.0%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참고3 참조).

<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위원 구성 현황 >

회계연도	합계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 비율(%)
2018회계	10	9	1	10.0
2017회계	10	9	1	10.0
2016회계	10	9	1	10.0
2015회계	10	9	1	10.0
2014회계	10	10	0	0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결산검사위원회는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요구권이나 조사 권한을 수행하는 등,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안을 본 개정안에 차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장의 추천 권한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범위 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결산검사위원의 성격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948(2008.12.17.)>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출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425, 2018.3.27.) 7페이지.

○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참고4 참조)을 보면, 위원 10명 중 여성 위원 수가 3명으로 제출(2020.2.6.)되어 성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바, 효과적인 결산검사 수행 및 위원 성비 개선을 위한 인력풀 마련에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위원의 자격(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원, 공인회계사·세무사, 예산·결산 업무 경험 5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검사·감사직 3년 이상 경력자, 시민단체 추천자 중 재무관리 3년 이상 경험자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운영 및 살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감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

⑤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가)	세 입(나)		세 출(다)		이월액(라)		보조금 반납액 (마)	집행잔액(바)		순세계잉여금(사)		
			%		%		%		가다라마	%	(나다라마)	%	
18년	합계	36조 5,479	38조 1,121	104.3	34조 3,355	93.9	1조 1,369	3.1	643	1조 112	2.8	2조 5,754	7.0
	일반	25조 4,772	27조 948	106.3	24조 6,988	96.9	2,162	0.8	378	5,244	2.1	2조 1,419	8.4
	특별	11조 707	11조 173	99.5	9조 6,367	87.0	9,207	8.3	265	4,868	4.4	4,335	3.9
17년	합계	32조 9,162	35조 2,459	107.1	31조 147	94.2	7,662	2.3	329	1조 1,024	3.3	3조 4,321	9.7
	일반	22조 8,187	24조 7,471	108.5	22조 776	96.8	2,076	0.9	305	5,030	2.2	2조 4,314	9.8
	특별	10조 974	10조 4,988	104.0	8조 9,371	88.5	5,586	5.5	24	5,993	5.9	1조 7	9.5
16년	합계	30조 6,041	32조 5,899	106.5	28조 7,514	93.9	9,342	3.1	317	8,868	2.9	2조 8,726	9.4
	일반	21조 2,990	23조 192	108.1	20조 6,838	97.1	2,462	1.2	304	3,386	1.6	2조 588	9.7
	특별	9조 3,051	9조 5,707	102.9	8조 676	86.7	6,880	7.4	13	5,482	5.9	8,138	8.7
15년	합계	27조 1,121	28조 7,156	105.9	25조 5,216	94.1	7,818	2.9	312	7,775	2.9	2조 3,810	8.8
	일반	19조 2,139	20조 4,828	106.6	18조 4,480	96.0	3,149	1.6	311	4,199	2.2	1조 6,888	8.8
	특별	7조 8,982	8조 2,328	104.2	7조 736	89.6	4,669	5.9	1	3,576	4.5	6,922	8.8
14년	합계	25조 5,227	25조 8,867	101.4	24조 1,753	94.7	5,983	2.3	261	7,230	2.8	9,870	3.9
	일반	17조 5,055	17조 6,571	100.9	16조 9,126	96.6	1,990	1.1	256	3,683	2.1	4,199	2.4
	특별	8조 172	8조 2,296	102.6	7조 2,627	90.6	3,993	5.0	5	3,547	4.4	5,671	7.1
5년 평균	합계	30조 5,406	21조 1,100	105.0	28조 7,597	94.2	8,435	2.7	540	9,002	2.9	2조 4,496	7.8
	일반	21조 2,629	18조 4,602	106.1	20조 5,642	96.7	2,368	1.1	311	4,308	2.0	1조 7,482	7.8
	특별	9조 2,777	9조 5,098	102.6	8조 1,955	88.5	6,067	6.4	62	4,693	5.1	7,015	7.6

※ 순세계 잉여금(사) = 결산상 잉여금(나-다)-이월액(라)-보조금반납액(바)-현년도채무상환

※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함

※ 현년도 채무상환은 2014회계연도만(1,000억원) 있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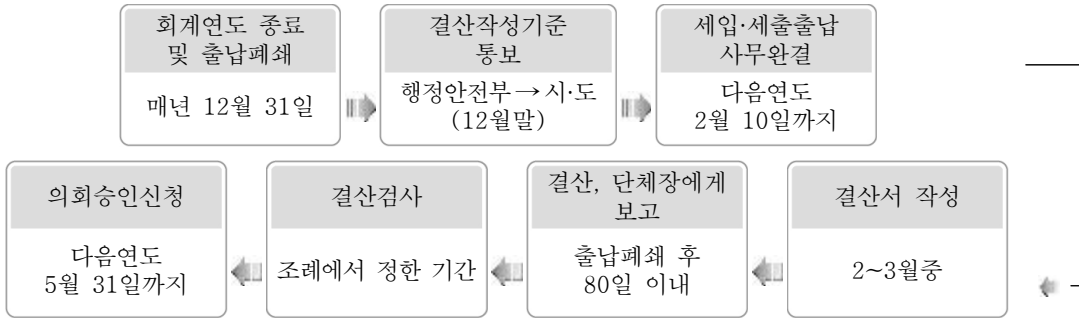
연번	성명 (나이)	현직	주요학·경력	비고 (성별)
1	이○○ (48)	시 의 원 (강동구 제1선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대표위원 (남)
2	고○○ (46)	시 의 원 (종로구 제1선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석사) 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남)
3	오○○ (44)	시 의 원 (광진구 제2선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청 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여)
4	박○○ (60)	세 무 사 (세무법인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 지방세 지문위원, 서울교통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 	(남)
5	민○○ (40)	공인회계사 (뱅크세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삼성정밀화학, 프라임에셋 근무 	(남)
6	이○○ (54)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MGB Endoskopische Gerate GmbH (Berlin), CFO 근무 	(남)
7	이○○ (53)	세 무 사 (세무회계 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국세청, 기획재정부 근무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 강사 	(남)
8	이○○ (49)	세 무 사 (세무그룹 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세무그룹 신아 대표세무사 경기도 사회적기업 경영코칭 컨설턴트, 세법총론발간위원회 위원 	(남)
9	변○○ (45)	공인회계사 (우덕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전공 2015년 서울시 및 2016년 마포구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남)
10	전○○ (54)	시 민 단 체 (서울시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울시민연대 대표, 2017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 협의회 위원 역임 	연임 (남)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김 ○ ○	시 의 원 (광진구 제3선거구)	남
2	정 ○ ○	시 의 원 (송파구 제6선거구)	남
3	최 ○ ○	시 의 원 (강북구 제3선거구)	여
4	박 ○ ○	세 무 사 (세무법인 공감)	남
5	엄 ○ ○	공인회계사 (정동회계법인)	여
6	김 ○ ○	세 무 사 (세무사 김재서 사무소)	남
7	변 ○ ○	공인회계사 (우덕회계법인)	남
8	이 ○ ○	세 무 사 (세무그룹 신아)	남
9	박 ○ ○	공인회계사 (한길회계법인)	여
10	전 ○ ○	시민단체 (서울시민연대)	남

참 고 5

결산업무 처리순기



참 고 6

지방자치단체 결산과정

